



의안번호	제67호
의결 년월일	2015. 11. 6. (제241회)

심  
의  
의  
결  
사  
항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 
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복지환경국장 고재식
제출년월일	2015. 11.

기획예산과장 심사필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,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, 건강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

- 최저생계비 120% 미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 
⇒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

나. 지원범위 확대

- 건강보험료 부과금 월 1만원 이하 ⇒ 월 1만 5천원 이하

다. 지원기준 정비

- 광진구 거주기준 6개월 이상 및 지원대상자로만 구성된 가구
- 지원대상가구  
: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세대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편성

나. 합의사항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규제심사 : 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”
- 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"차상위계층"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①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천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(이하 "지사"라 한다)의 지역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며, 다음 각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한다.

1. 65세이상 노인 세대
2. 등록장애인 세대

3. 국가유공자 세대

4. 한부모가정 세대

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세대의 월 건강 보험료가 소득·재산 등 자산의 변동없이 1만 5천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지원대상자로 본다. 다만, 소득·재산 등 자산의 변동이 있어 월 보험료가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지원 실시)**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, 월별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.

**제5조(대상자 결정)** ①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**제6조(조사 실시)**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, 재산상황,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예산 확보)**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보험료 지급방법)**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**제9조(환수 등)**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제6조(조사 실시)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, 재산상황,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험료 지급방법)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제9조(환수 등)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(조사 실시) ①-----  
-- 제2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예산 확보) 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보험료 지급방법)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환수 등) ①-----  
----- 따  
른 -----  
-----.

②제1항에 따라 -----  
-- 사람이 -----  
-----  
----- 따라 -----.

제10조(준용) -----  
-----  
----- 따른다.

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 
로 정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  
에 -----  
-----.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예산을 기존 10,000천원에서 30,0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, 향후,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1호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- 근거규정에 따른 1억 미만의 사업

**4. 작성자**

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홍지유

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최종헌